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 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7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토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습식·방 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석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 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 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 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 물·창호 ·온실공 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 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법인	1억5천만원	사무실

· 건축물 조립 공사업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및 개인	이상	
철근 · 콘 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상 · 하수 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보링 · 그 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철도 · 궤 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법인	2억원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
		개인	4억원 이상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 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 세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조경 시설물설 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 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 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 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 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 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 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 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 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 미터 이상, 폭 15 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 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2명 이상			
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3. 동력원치(동력 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5. 사무실
준설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 (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 달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 치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체 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 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도료 도포막) 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체 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 시공업제 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 시공업제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 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 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 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 지 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 기·망원경 및 균 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 른 단단한 정 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 체인 다. 초음파에 의 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 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 식검사: 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 (resistivity), 전

				위치측정장치(hal f cell potential) 5. 사무실
--	--	--	--	---

비고

1. 기술능력

-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